

의안번호	2217490
의 퇴 인	부승찬의원
회 답 일	2026.10.16.
추 계 번호	26D146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순직유형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사망자를 순직으로 분류할 경우, 2028년 22억 7,900만원, 2032년 24억 8,500만원 등 추계기간 총 119억 100만원(연평균 23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순직유형 분류 기준 변경 및 고의 또는 중과실 사망자 순직 인정(안 제54조의2)	2,279	2,326	2,382	2,429	2,485	11,901	2,3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4조의2 (전사자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제1항) 가. 순직 I 형: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나. 순직 II 형: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질병 포함)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함. 다만,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사자등의 구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군인이 사망할 경우, 현행법은 순직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순직유형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순직유형별 사망보상금 지급금액 차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함

[표 2] 현행법과 개정안의 순직유형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순직 유형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Ⅰ형: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Ⅱ형: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중 가목(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질병 포함)

자료: 「군인사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현재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군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사, 특수직무순직, 그 밖의 공무원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45배, 24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 순직유형에 따른 사망보상금 비교

구분	기준	사망보상금
전사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특수직무 순직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그 밖의 공무원 사망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자료: 「군인 재해보상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현재 「군인사법」의 순직Ⅰ형은 「군인 재해보상법」의 특수직무순직으로 보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를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의 순직Ⅱ형과 순직Ⅲ형은 「군인 재해보상법」의 그 밖의 공무원사망으로 보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를 지급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는 현행법에 따른 순직Ⅱ형에 해당되는 경우로, 「군인 재해보상법」의 그 밖의 공무원 사망에 해당되는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순직Ⅰ형으로 변경되어 「군인 재해보상법」의 특수직무순직에 해당하는 사망보상금(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순직Ⅰ형의 업무성격과 보상수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함
- 또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경우 순직자로 분류되어 병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에서 사망보상금 및 전우사랑위로금 지급대상자가 되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여 순직자로 분류될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근거한 사망보상금(개정안의 순직Ⅱ형)을 지급하게 됨
 - 또한, 의무복무군인과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할 경우, 「군인복지기금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현재는 병사망위로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순직자로 분류되면 전우사랑위로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게 됨

- 추계기간 병사망위로금과 전우사랑위로금은 각각 3천만원, 1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8~2032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순직유형 분류 기준 변경(안 제54조의2제1항)

- (지급대상) 개정안에 따른 경우, 사망보상금 지급액이 인상되는 경우는 현행법 상 순직Ⅱ형이 개정법 상 순직Ⅰ형으로 분류되는 인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인원인 9명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현행법의 순직Ⅰ형은 개정안의 순직Ⅰ형으로, 현행법의 순직Ⅲ형은 개정안의 순직Ⅱ형으로 분류하고, 사망보상금은 현행과 동일함

[표 4] 현행법 기준 순직유형별 현황

구 분	현행법				개정안		
	순직Ⅰ형	순직Ⅱ형	순직Ⅲ형	합계	순직Ⅰ형	순직Ⅱ형	합계
2021년	3	7	217	227	10	217	227
2022년	6	6	335	347	12	335	347
2023년	2	13	309	324	15	309	324
2024년	1	12	251	264	13	251	264
2025년	8	5	330	343	13	330	343
평균	4	9	288	301	13	288	301

자료: 국방부

- (추가지급단가)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행법 상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정안에 따른 경우 순직Ⅰ형으로 변경되어 사망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24배에서 45배로 증액됨
 - 추계기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5%를 적용하여 산정

[표 5]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추이

(단위: 천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90	5,440	5,520	5,710	5,950	2.5

자료: 인사혁신처

[표 6]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추정

(단위: 천원, %)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연평균 증가율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6,252	6,408	6,568	6,732	6,900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추가지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순직유형 분류 기준 변경에 따른 사망보상금 추가지급단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사망보상금 추가지급단가	131	135	138	141	1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순직유형 분류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지급대상인원에 추가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8] 순직유형 분류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추가재정소요	1,182	1,211	1,241	1,272	1,304	6,2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고의 또는 중과실 사망자 순직 인정(안 제54조의2제2항)

□ (지급대상) 개정안에 따른 경우, 일반사망자에서 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고의/중과실, 군무/무단이탈로 사망한 경우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인원인 5명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9] 현행법 기준 일반사망자 현황

구 분	고의/중과실	군무/무단이탈	기타	합계
2021년	1	5	34	40
2022년	1	3	34	38
2023년	2	3	39	44
2024년	3	3	46	52
2025년	2	1	37	40
평균	2	3	38	43

자료: 국방부

- (추가지급단가) 현행법 상 고의 또는 중과실 사망자에게 지급되던 병사망위로금과 개정법 상 사망보상금(개정안의 순직Ⅱ형) 및 전우사랑위로금 간의 차액을 산정
- 추계기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5%를 적용하여 산정
 - 병사망위로금 및 전우사랑위로금은 각각 3천만원, 1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표 10] 고의 또는 중과실 사망자 순직 인정에 따른 사망보상금 추가지급단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현행법	병사망위로금(A)	30	30	30	30	30
개정법	사망보상금(개정법 순직Ⅱ형)	150	154	158	162	166
	전우사랑위로금	100	100	100	100	100
	소계(B)	250	254	258	262	266
	사망보상금 추가지급단가(B-A)	220	224	228	232	2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 사망자를 순직으로 분류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지급대상인원에 추가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1] 순직유형 분류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추가재정소요	1,100	1,120	1,140	1,160	1,180	5,7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순직유형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사망자를 순직으로 분류할 경우, 2028년 22억 7,900만원, 2032년 24억 8,500만원 등 추계기간 총 119억 100만원(연평균 23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순직유형 분류 기준 변경 및 고의 또는 중과실 사망자 순직 인정(안 제54조의2)	2,279	2,326	2,382	2,429	2,485	11,901	2,3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에 따라 순직 유형이 변경되거나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인정되어 사망보상금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인원의 최근 5년 평균이 추계기간 계속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